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건의

2022. 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및 최소적립금 미달 기업 과태료 부담 완화 건의

🔲 관련 규정

-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 립금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575호 제 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근거	과태료		
위반행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	법 제48조			. +151.01
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2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법정 최소 적립금 이상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근로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적립비율을 준수하 여야 함.
- 최소적립비율은 2013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0%로 상향 조정됨.

과거근로기간의 연수 가입 후 연차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 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 년도	-	-	-	-	100분의 100

-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2022. 4. 13. 개정)
- 또한 종전에는 최소적립금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뿐 별도의 제재 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22. 4. 14)을 통해 적립금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즉,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2024년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임.
-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자금사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최소적립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수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상향과 불충족시 과태료 부과는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 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에 따른 신용등급 하 락, 대출한도 축소 등 유동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시 해소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 조달 방안 및 영향

방 안		영 향		
내부조달	내부유보자금 활용	신규 투자 위축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일자리 감소		
외부조달	보유자산 매각 회사채 발행 은행 또는 기관 차입	차입금 및 이자 부담 증가		

🔲 대책건의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기업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차이를 반영하여 최소적립비율 기준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구 분	최소적립비율
대·중견기업	100%
중소기업	비율 완화

○ 또한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1차 위반 시 지도·편달 위주로 진행하되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주실 것 을 건의함.

	근거		과태료	
위반행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법 제48조	지는 편다	과태료	과태료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2호	지도 편달	부과	부과